



사 규

ESG 위원회 운영 규정

사규번호	HFC-P-BA0014		
제정일자	2022.03.25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1 / 4

[목 차]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직무 및 부의사항)
- 제4조(구성)
- 제5조(임기)
- 제6조(위원장)
- 제7조(종류)
- 제8조(소집권자)
- 제9조(소집절차)
- 제10조(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제11조(통보의무)
- 제12조(의사록)
- 제13조(규정의 개·폐)
- 부 칙

[제/개정 이력 및 승인]

			최신본 승인	작성	검토	승인
개정번호	제/개정일	작성팀		작성자	제/개정내역	
0	2022.03.25	경영지원팀	박창규	신규제정		

	사 규	사규번호	HFC-P-BA0014		
		제정일자	2022.03.25		
	ESG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2 / 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관 제40조의 2에 근거하여 ESG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ESG 위원회 절차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관리 함으로써, ESG 동향의 변화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의 증대에 따라 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직무 및 부의사항)

① 위원회는 ESG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법령,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ESG 목표 정의 및 전략적 목표를 포함한 비전 및 전략 수립
2. ESG 전략과 사업계획의 연계 및 법인별 실행계획에 대한 프레임 워크 제공
3. ESG 리스크의 지속적 검토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4. ESG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견해 이사회 제공 통한 의사결정, 감독 및 리더십 지원
5. 변혁적 OSH 리더십에 연계한 ESG 리더십 행동규범 규명
6. 전략적 선행/후행지표를 선정 및 모니터링
7. 중대재해 및 주요 ESG 영향에 대한 근본원인 식별 및 개선
8. ESG 이슈에 대한 개선 및 대응 현황 추적관리 통한 관련 프로세스 운영
9. 리스크 기반 ESG 성과 평가 및 이사회 공유
10. ESG 전반 동향 및 위험/기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 이사회 제공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 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ESG 그룹 비전, 미션,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2. ESG 주요 지표 및 KPI
3. 리스크, 동향 및 관련정보

	사 규	사규번호	HFC-P-BA0014		
		제정일자	2022.03.25		
	ESG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3 / 4

4. 연간 ESG 경영 검토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 6 조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장 유고 시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7 조 (종류)

ESG위원회는 정기ESG위원회와 임시ESG위원회로 한다.
정기ESG위원회는 각 반기별로 1회 날을 정하여 개최한다.
임시ESG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의일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 규	사규번호	HFC-P-BA0014		
		제정일자	2022.03.25		
	ESG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일자	-		
		개정번호	0	페이지	4 / 4

③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0 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②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통보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의사록은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